

定 款

개정 : 1987. 3. 27

◇ 개정이유

현 정관은 통합예산 체제에 의한 협회를 운영하고 있으나 앞으로 지방화 시대로 전환하고 있는 상황에서 본 협회 운영도 지부 자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독립예산 체제로 전환 운영하고자 관개 규정을 보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골자

- 가. 본협회 사업에 건축사 연금 제도 신설(제 5 조 제 2 항)
- 나. 추대회원은 이사회에서 추천받아 총회에서 추대(제 7 조 제 2 항 1 호)
- 다. 감사는 감사규정에 의하여 감사를 실시토록 함(제14조 제 4 항)
- 라. 본 협회 정기총회를 매년 10월중에 소집하던 것을 매년 11월에 소집하는 것으로 변경(제20조제 4 항)
- 마. 총회소집은 최소한 10일전에 통지 및 신문공고로 7 일전으로 변경(제21조 제 2 항)
- 바. 본 협회 총회에서 전국 실적회비 징수율 결정에 대한 의결사항신설(제22조 제 1 항 5 호)
- 사. 본 협회 총회의결 사항중 제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건축사연금 규정삽입(제22조 제 7 호)
- 아. 지부의 사업계획 및 보고서 예산 및 결산서를 총회에 보고사항신설(제22조 제 2 항)
- 자. 위원회 통폐한(편찬, 홍보위원회, 법제위원회 등) 현행 8 개위원회에서 6 개위원회로 축소(제25조)
- 차. 사무처 기구증 일부 축소(홍보담당, 법규담당 삭제) (제27조 제 2 항)
- 카. 협회 재정에 사업수입 증 내용 명문화(제29조 제 1 항 제 5 호 나열)
- 타. 협회 재정을 입회비, 월정회비, 실적회비의 전국 징수율을 총회에서 정하고 찬조회비, 사업수입, 수수료 등을 이사회에서 정하도록 함(제29조 제 2 항)
- 파. 본협회 회계증 당해 년도증에

확정된 수입금과 지출금은 수납 및 지출은 다음년도 1월 31일까지를 1월 20일까지로 변경(제30조 제 1 항)
하. 지부 사업에 대한 명문화(제32조)
가. 부지부장 제도 신설 및 간사수 조정과 지부감사를 감사규정에 의하여 감사를 할 수 있도록 명문화(제32조 제 1 항)

냐. 부지부장제도 신설로 인하여 지부장 유고시 부지부장이 직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함(제33조 제 2 항)
다. 지부 임원의 직무중 감사 및 분소장은 간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신설(제34조 5 항)

라. 임원 및 대의원의 임기란에 부지부지부장 삽입(제36조)
마. 지부회의에 총회를 지부 총회로 명문화(제37조)

바. 지부 정기총회를 매년 11월중에 소집하던 것을 매년 10월중에 소집일정 변경(제38조)

사. 지부 총회에서 지부 실적회비 징수율의 결정 사업계획 보고서, 예산 및 결산의 의결 사항 신설(제40조)
야. 지부총회소집 일정과 신문공고 사항 삽입과 성원 사항 세분화(제41조 제 1 항)

자. 지부에도 윤리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제43조제 1 항 1 호)

차. 지부위원회 구성 사항 신설(제44조)

캬. 지부사업을 수행하고자 할시는 회장 승인을 받도록 한 것을 보고토록 함(제48조)

탸. 지부의 재정은 실적회비, 찬조회비, 및 사업수입금 등으로 충당할 수 있도록 함(제50조)

파. 회비 송금 사항신설(제51조)

하. 지부결산서를 매년 1월 말일까지 작성하는 것을 매년 2월 10일까지로 하고 결산서를 지부 임시총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함(제53조)

정관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제 5 조 제②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②항을 ③항으로 제③항을 제④항으로 한다.

② 본 협회는 건축사 연금제도를 두며 운영상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제 7 조 제①항제 1 호증 “정회원으로서 총회에서 추대 받은 자”를 “정회원으로

서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총회에서 추대받은 자”로 한다.

제14조제④항증 “감사는 본 협회의 업무 및 회계사무를 감시하며 이를 총회에서 보고한다”를 “감사는 감사 규정에 의거 본협회의 업무 및 회계 사무를 감사하며 이를 총회에 보고한다”로 한다.

제20조 제④항증 “정기총회는 매년 10월중에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 소집한다”를 “정기총회는 매년 11월중에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 소집한다”로 한다.

제21조 제②항증 “10일전”을 “7 일전”으로 하고 “회원에게”를 “대의원에게”로 한다.

제22조 “(총회의 의결사항)”을 “(총회의 의결사항 및 보고 사항)”으로 한다.

○제①항 “제 5 호”로 “전국실적회비 징수율의 결정”을 신설한다.

○“제 5 호”를 “제①항 제 6 호”로 한다.

○제 6 호증 “감사규정은 총회에서 의결하고”를 제①항 제 7 호로 하여 “감사규정 및 건축사 연금규정은 총회에서 의결하기로 한다.

○제 “7 호를” “제①항 8 호”로 한다.

○제 2 항으로 “지부의 사업계획 및 보고서 예산 및 결산서는 총회에 보고 한다”를 신설한다.

제24조 제②항증 “이사회는 총회의 위임사항과 제22조 제 6 호 단서의 규정에”를 “이사회는 총회의 위임사항과 제22조 제 7 호 단서의 규정에”로 한다.

제25조 “제 2 호의 편찬위원회”를 “편찬홍보위원회”로 하고, “제 4 호의 법규위원회”를 “법제위원회”로 한다.
제 6 조 제 7 호 제 8 호를 삭제하고 제 6 호로 연수위원회를 신설하고 “제9호”를 “제 7 호”로 한다.

제27조 제②항증 “사무처에는 사무처장 1인과 사무처장 밑에 홍보담당, 법규담당 각 1인과 다음 각호의 부서를 둘 수 있다”를 “사무처장 1인과 사무처장 밑에 다음 각호의 부서를 둘 수 있다”로 한다.

제29조 “제①항 5 호의 나”의 회관 임대료(은행, 카페, 식당) 및 기타 문화서비스(강당, 전시장) 수입”을 “회관 임대료 수입 및 기타 문화서비스 수입”으로 한다.

제 2 항중 “입회비 월정회비, 실적회비의 징수율 또는 징수금액은 매년 총회에서 정하되 예산 승인시 병행하여 정하며 찬조회비, 사업수입 수수료 등의 징수율 또는 징수금액은 이사회에서 정한다”를 “입회비 및 월정회비의 징수금액과 지부에서 정회원이 업무실적에 따라 수납하는 실적회비의 전국징수율(타지부회원 도서신고시 전국회원이 동일하게 납부하는 징수율)은 매년 총회에서 정하되 찬조회비 사업수입, 수수료 등의 징수금액은 이사회에서 정한다”로 한다.

제30조 제①항중 “다음 년도 1월31일 까지로 한다”를 “다음 년도 1월 20일 까지로 한다”로 한다.

제3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지부는 제 3 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한다.

1. 건축 및 건축사 업무에 관한 조사 연구
2. 건축 시공 기술에 관한 지도 · 감정
3. 회원의 복지후생을 위한 사업
4. 회원의 업무윤리에 관한 사항
5. 회원의 관리업무에 관한 사항
6. 본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7. 기타 간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3조 제①항중

제②호로 부지부장 : 1인을 신설

제②호 간사 : 다음 각목에서 정하는 인원

가. 회원 100명 이내 지부 3 명

나. 회원 101명 - 300명 지부 4 명

다. 회원 301명~500명 지부 5 명

라. 회원 501명이상 지부 7 명을

“제 3 호로 하여 간사 : 소속 정회원수를 기준하여 정하며 100인 미만의 지부는 3 인으로 하고 100인을 초과할 때마다 1인을 더 선출하되 총 12인을 초과할 수 없다”로 한다.

제 4 호로 “감사 2 인”을 신설한다.

제 3 호를 제 5 호로 한다.

제②항중 지부 및 분소의 업무와 회계 사무에 대한 지부 자체의 감사업무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부에는 이사회와의 의결을 거쳐 지부 감사 2 명을 둘 수 있다”를 “삭제”한다.

제33조를 제34조로 하여 제②항중

“부지부장 유고시에는 회장이 지명한 간사가 이를 대행한다”를 “부지부장은 지부장을 보좌하며 지부장 유고시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⑤항으로 감사 및 분소장은 간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제의 할 수 있다를 신설한다.

제35조를 제36조로 하여 제①항중 “지부장 및 간사, 지부감사의 임기는 각각 2 년으로 한다”를 “지부장, 부지부장 및 간사, 지부감사의 임기는 각각 2 년으로 한다”로 한다.

제37조를 제38조로 하여 제 1 호중 “총회”를 “지부총회”로 한다.

제38조를 제39조로 하여 제①항중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를 “지부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로 한다.

제②항중 “총회는 지부회원으로 구성 한다”를 “지부총회는 지부소속회원으로 이를 구성한다”로 한다.

제③항중 “정기총회는 매년 11월중에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다음의 경우에 회장의 승인을 받아 소집할 수 있다”를 “정기총회는 매년 10월중에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다음의 경우에 회장에게 보고후 소집할 수 있다”로 한다.

제39조를 제40조로 하여 제 2 , 3 , 4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임원 및 대의원 개선
2. 기타 간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을

1. 임원 및 대의원의 개선
2. 사업계획 및 보고서, 예산 및 결산의 승인
3. 지부 실적회비 징수율의 결정
4. 기본 재산의 설치 및 처분
5. 기타 간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40조를 제41조로 하여 “총회는 지부장이 소집하며 성원 및 의결에 관한 사항은 제2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정회원이 200명을 초과하는

지부의 총회는 소속된 정회원이 3 분의 1 이상 출석으로 성립하고 정회원이 500명을 초과하는 지부의 총회는 소속된

정회원이 5 분의 1 이상 출석으로 성립할 수 있다”를 “① 지부총회는 지부장이 소집하며 최소한 7 일전에 지부총회의 목적, 일시, 장소 등을 표시한 문서로써 회원에게 통지함과 동시에 일간신문에 공고한다”로 한다.

② “성원 및 의결에 관한 사항은 제2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정회원이 200인을 초과하는 지부의

총회는 소속된 정회원의 3 분의 1 이상 출석으로 성립하고 정회원이 500인을 초과하는 지부의 총회는 소속된 정회원의 5 분의 1 이상 출석으로 성립할 수 있다”로 한다.

제4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간사회) 간사회의 소집, 성원 및 의결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1조를 제43조로 하여 제①항중 “지부에는 설계도서 검토위원회를 둔다”를 “지부에는 다음의 위원회를 둈다”

1. 윤리위원회
2. 설계도서검토위원회
3. 기타 간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원회

제4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에는 위원장 1인 위원 약간명을 두되 간사회의 의결을 거쳐 지부장이 위촉한다.

② 위원회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종임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성원 및 의결방법은 별도 규정이 없는한 간사회에 관한 절차에 따른다.

④ 각종 위원회의 규정은 협회의 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2조를 제45조로 하여 제②항중 “사무국은 사무국장 1 명과 다음 각호의 부서를 둘 수 있다”를 “사무국은 사무국장 1 인과 다음 각호의 부서를 둘 수 있다”로 한다.

제45조를 제48조로 하여 “지부가 승인된 당해년도 운영계획에 의한 사업 이외의 사업을 수행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업의 실시 10일전에 추가 사업계획서 및 소요예산 내역서를 갖추어 회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를 “지부가 총회에서 승인된 당해년도 사업계획 이외의 사업을 수행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업의 실시 10일전에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본협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사업종목

2.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제47조를 제50조로 하여 제①항 “지부의 재정은 본협회에서 배정하는 예산으로 충당한다”를 “지부의 재정은 실적회비, 찬조회비 및 사업수입금 등으로 충당 한다”로 하여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실적회비 : 정회원이 업무실적에 따라 납부하는 회비

2. 찬조회비 : 찬조회원이 납부하는

회비 및 기타 찬조금

3. 사업수입

가. 도서출판에 따른 광고료 및 기타 사업의 부대수입

나. 회관임대료 수입

4. 수수료 : 감정 및 제증명 수수료

5. 기타수입 : 기타 접수입

제②항중 지부에 배정하는 예산은 협회 정기총회에서 정한다를 “지부 실적회비 징수율은 매년 지부총회에서 정하되 찬조회비, 사업수입, 수수료 등의 징수 금액은 간사회에서 정한다”로 한다.

제5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회비송금) 지부에서 수납된 입회비, 월정회비는 매월 말일까지 마감하여 익월 10일까지 본협회로 송금하여야 한다.

제48조를 제52조로 하여 제②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지부에는 특별회계를 둘 수 있다.

제49조를 제53조로 하여 “지부장은 매년 1월말일까지 전년도의 사업보고서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 감사를 받아야 하며 다음 지부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를 “지부장은 매년 2월10일까지 전년도의 사업보고서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 감사를 받아야 하며 2월말까지 지부 임시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로 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본 정관은 1987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경과조치) ① 제 7 조제 2 항제 1 호, 제 14조제 4 항, 제 20조제 4 항, 제 21조제 2 항, 제 22조제 1 항제 5 호 · 제 7 호 · 제 2 항, 제 29조, 제 39조, 제 41조, 제 50조는 1987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② 제 25조, 제 27조, 제 30조, 제 32조 내지 제 34조, 제 43조, 제 44조, 제 48조, 제 51조 내지 제 53조는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감사규정

개정 : 1987. 3. 27

■ 개정이유

협회의 감사업무를 보다 원활하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본부감사와

지부감사로 구분명시하고 이에 따른 감사의 업무 및 기능을 정비 보완 하였으며 피감사처의 수감업무와 보고 체계 등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함.

■ 주요골자

가. 감사는 본부감사와 지부감사로 구분함. (제 3 조)

나. 감사는 협회의 의결기관 및 사무 집행기구로 부터 독립된 위치에서 직무수행신설(제 5 조)

다. 감사의 권한 및 의무조항 신설 (제 7 조, 제 8 조)

라. 재심청구에 대한 감사의 조치 (제 2 조제 2 항)

마. 사무처가 업무수행과정에서 사고 또는 외부감사기관 등으로 부터 감사를 받을 때 회장 또는 지부장은 이를 감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는 제도신설 (제 14조, 제 21조)

감사규정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현행과 같음)

제 2 조 (정의) (현행과 같음)

제 3 조 (구성 및 기능) ① 감사는 본부감사와 지부감사로 구분한다.

1. 본부감사 : 본 협회 총회에서 선출된 감사를 말한다.

2. 지부감사 : 지부 총회에서 선출된 감사를 말한다.

② 감사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일반업무

2. 회계업무

3. 관리업무

4. 기타 정회원의 권익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 4 조 (감사의 종류) 감사는 정기감사와 수시감사로 구분한다.

1. 정기감사-정기감사라 함은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를 기준하여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감사를 말한다.

2. 수시감사-수시감사라 함은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및 회장 또는 지부장의 요구가 있을 때에 부정기적으로 실시되는 감사를 말하며 이 감사는 특수사항에 대하여 실시한다.

제 5 조 (감사의 독립원칙) 감사는 협회의 의결기관 및 사무집행기구로 부터 독립된 위치에서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 6 조 (감사의 협조) 피감사처는 감사가

요구하는 서류 및 기타감사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제시하여야 하며 감사 실시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 7 조 (감사의 권한) 감사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가진다.

1. 제장부, 증빙서 및 관계서류의 제출요구

2. 관계자의 출석답변 요구

3. 회계업무 관계, 거래처에 대한 조사 자료 징구

4. 기타 감사업무상 필요한 사항

제 8 조 (감사의 의무) 감사는 감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계법규 및 지시사항 등 사실과 증거에 의하여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2. 직무상 지득한 기밀을 공개하거나 이를 악용하여서는 아니된다.

3. 피감사자의 업무상 창의와 활동 기능을 위축 또는 침체시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 2 장 본부감사

제 9 조 (기능) 본부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는 본 협회 및 각 시도지부와 분소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한다.

제 10 조 (건의사항의 처리) ① 감사 결과에 의한 시정 및 건의사항은 그 조치를 위하여 이를 회장 및 관계 지부장에게 통보하여 시정 조치케 한다.

② 감사는 감사결과 위법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회장 또는 관계 지부장에게 시정, 변상, 징계, 경고 및 주의를 요구할 수 있다.

제 11 조 (시정보고) 전조에 의한 시정 통보를 받은 회장은 지정된 기일내에 시정결과를 감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관계 지부장은 시정 결과를 회장에게 제출하고 회장은 이를 감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 12 조 (재심의 요구) ① 회장 및 관계 지부장은 감사처분에 의한 시정조치 지시가 위법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처분 지시서가 도달한 날로 부터 15일 이내에 1회에 한하여 재 심의를 요구 할 수 있다.

② 재심의를 요구받은 감사는 1월이내에 재심의 요구서를 겸토하여 처분 지시 변동이나 기각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3조 (감사계획의 수립 및 실시)

- ① 감사는 감사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감사실시 계획서를 작성하여 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② 전항의 감사계획서에는 피감사처, 감사기간, 감사사항, 감사자 등을 명기하여야 한다.
- ③ 회장은 확정된 감사계획을 실시 10일전에 피감사처에 사전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 (사고보고 등) 회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자체없이 감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업무 수행과정에서 사고(금전, 물건의 망실 등)가 발생하였을 때.
2. 외부감사 기관이나 수사 기관으로부터 감사 또는 수사를 받았을 때.
3. 지부장으로부터 전기 각호의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았을 때.

제 3 장 지부가

제15조 (기능) 지부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는 당해지부 및 분소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한다.

제16조 (감사보고) 감사는 전조에 의한 감사결과를 작성하여 지부장에게 통보하고 이를 회장 및 본부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 (전의사항의 처리) ① 감사결과에 의한 시정 및 전의사항은 그 조치를 위하여 이를 당해 지부장에게 통보하여 시정 조치케 한다.

② 감사는 감사결과 위법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지부장에게 시정, 변상, 징계, 경고 및 주의를 요구할 수 있다.

제18조 (시정보고) 전조에 의한 시정 통보를 받은 지부장은 지정된 기일내에 시정 결과를 감사에게 통보하고 이를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 (재심청구) ① 지부장은 감사처분에 의한 시정조치 지시가 위법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처분지시가 도달한 날로 부터 15일 이내에 1회에 한하여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재심을 청구받은 감사는 1월이내에 재심의 요구서를 검토하여 처분지시 변동이나 기각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0조 (감사계획의 수립 및 실시)

- ① 감사는 감사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감사실시 계획서를 작성하여 당해 지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감사계획서에는 피감사처, 감사기간, 감사사항, 감사자 등을 명기하여야 한다.

③ 지부장은 확정된 감사계획을 실시 10일전에 피감사처에 사전 통보하여야 한다.

제21조 (사고보고 등) 지부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자체없이 감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업무 수행과정에서 사고(금전, 물건의 망실 등)가 발생하였을 때.
2. 외부 감사기관이나 수사기관으로부터 감사 또는 수사를 받았을 때.

제 4 장 세 칙

제22조 (세칙) 이 규정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부 칙

본 규정은 서기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윤리위원회 규정

개정 : 1987. 3. 27

◇ 주요골자

- 가. 협회에는 중앙윤리위원회를 두고 지부에는 지부윤리위원회를 둠(제 2 조)
- 나. 중앙윤리위원회의 및 지부윤리 위원회의 직무구분(제11조, 제25조)
- 다. 복심제도 운영에 대한 재심의 절차 및 결정(제21조)
- 라. 징계요청내용에 대한 수락여부의 결정신설(제22조)

제 1 장 총 칙

제 1조 (목적) (현행과 같음)

제 2조 (설치 및 구성) ① 협회에

중앙윤리위원회와 지부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각각 위원장 1인과 위원 6인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제 3조 (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회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
2. 회원의 정회에 관한 사항
3. 기타 회원 윤리에 관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 4조 (위원의 책임) (현행 제 6 조와 같음)

제 5조 (자격상실) (현행 제 9 조와 같은)

제 6조 (징계의 요청) 회장 또는 지부장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에 대하여 “별지제 1호서식”에 의하여 위원회에 징계요청을 할 수 있다.

제 7조 (징계의 심의) ① 위원장은 전조의 징계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20일 이내에 징계의 심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기간중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징계심의를 연기할 수 있다.

② (현행 제12조 제 2 항과 같음)

제 8조 (의견 청취) ① (현행 제13조와 같음)

제 9조 (징계의 기준) 회원의 징계는 “별표 1”의 기준에 의하여 결정한다.

제 2 장 중앙윤리위원회

제10조 (구성) 위원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중에서 회장이 위촉하며 위원은 정회원 또는 건축에 관한 법률 및 학식과 덕망이 있는자 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위촉한다.

제11조 (직무) 위원회는 다음의 경우에 이를 심의한다.

1. 지부의 징계처분에 불복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을 때.
2. 2개소 이상 지부 회원간의 분쟁이 연계되어 있을 때.
3. 관계 관청의 통고가 있을 때 (내용 선별후 지부 이첩)
4. 이사회의 요구가 있을 때.
5. 지부 간사회의 의결을 거쳐 지부장의 요청이 있을 때.

제12조 (위원장의 직무) (현행 제 4 조와 같음)

제13조 (소집 및 결정) ① (현행 제 5 조 제 1 항과 같음)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14조 (서기) (현행 제 7 조와 같음)

제15조 (직무기피) (현행 제 8 조와 같음)

제16조 (보선) 위원장 및 위원중 결원이 생김으로서 보선을 하여야 할 경우의 절차에 있어서는 제1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7조(결과보고) (현행 제14조와 같음)

제18조(수락여부의 결정) ① 회장은 전조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30일 이내에 이사회와 협의를 거쳐 위원회 결정사항에 대한 수락여부를 확정하여야 한다.

② 이사회는 수락여부의 확정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위원장을 참석케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③ 회장은 제1항의 결정사항을 확정한 때에는 위원장에게 통고한 후 피정계자 및 각시도 지부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9조(수락여부) ① 이사회는 위원회의 결정사항에 대한 수락여부를 확정하여야 하며 결정사항의 내용 변경을 할 수 없다.

② (현행 제16조 제2항과 같음)

제20조(재심청구) 정계처분을 받은 자가 그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정계 결정서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1회에 한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제21조(재심의 절차 및 결정) ① 회장은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재심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위원장에게 재심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9조 제2항 및 제20조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재심요구 또는 재심청구에 있어 그 사유가 정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이를 기각할 수 있다.

③ 위원회가 당초 정계처분 받은 자에 대하여 재심을 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재심청구자 및 각시도지부장에게 통보하고 이를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가 제19조 제2항 및 제20조와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심을 하는 경우에는 당초에 결정한 정계보다 중한 징계를 결정할 수 없다.

⑤ 제19조 제2항 및 제20조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심의 절차에 있어서는 제7조 및 제1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2조(정계요청 내용에 대한 수락 여부의 결정) 회장은 정계요청 사항에 대하여 그 사유가 정당하지 않거나 관계 증빙서류가 불충분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서류 보완을 요구하여야 하며 이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이를 반려할 수 있다.

제23조(정계발효) 정계 결정사항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장이 “별지 제2호서식”으로 통보함으로써 발효한다.

제3장 지부윤리위원회

제24조(구성) 위원장은 간사회의 의결을 거쳐 간사중에서 지부장이 위촉하며 위원은 제10조의 위촉기준에 따라 지부장이 위촉한다.

제25조(직무) 위원회는 다음의 경우에 이를 심의한다.

1. 정회원의 요청이 있을 때.
2. 간사회의 요구가 있을 때.
3. 관계 판정의 통고가 있을 때.
4. 회장의 요구가 있을 때.

제2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통리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지부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7조(소집 및 결정) ① 지부장은 위원회를 소집하며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28조(서기) ① 위원회에는 서기 1인을 둔다.

② 서기는 사무국 직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고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29조(직무기피) ① 위원장 및 위원이 본 규정에 의한 사건에 관련되었을 때에는 사건심의 5일전에 위원 보임 요청서를 지부장에게 제출하고 당해 사건심의를 기피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 및 위원을 임시 보임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지부장이 이를 보임하여야 한다.

제30조(보선) 위원장 및 위원중 결원이 생김으로서 보선을 하여야 할 경우의 절차에 있어서는 제2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1조(결과보고) 위원장은 정계 결정 사항을 “별지 제2호서식”으로 작성하여 지체없이 지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2조(수락여부의 결정) ① 지부장은 전조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30일 이내에 간사회의 협의를 거쳐 위원회 결정사항에 대한 수락여부를 확정하여야 한다.

② 간사회는 수락여부의 확정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위원장을 참석케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③ 지부장은 전호의 결정 사항을 확정한 때에는 피징계자 및 각시도 지부장에게 통보하고 이를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3조(수락여부) ① 간사회는 위원회의 결정사항에 대한 수락여부를 확정하며 결정사항의 내용 변경을 할 수 없다.

② 지부장은 간사회가 위원회의 결정 사항의 수락을 거부한 때에는 즉시 그 사유를 첨부하여 위원장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제34조(재심청구) 정계처분을 받은자가 그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정계 결정서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1회에 한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중앙윤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제35조(징계요청 내용에 대한 수락 여부의 결정) 지부장은 정계요청 사항에 대하여 그 사유가 정당하지 않거나 관계 증빙서류가 불충분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서류 보완을 요구하여야 하며 이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이를 반려할 수 있다.

제36조(징계발효) 정계결정 사항은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부장이 “별지 제2호서식”으로 통보함으로써 발효한다.

부 칙

본 규정은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건축사연금규정

개정 : 1987. 3. 27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협회 정관 제5조에 그 근거를 두며 회원의 퇴직 또는 사망시 수혜금을 지급하고 해당회원에 대하여 복지연금을 지급하여 노후의 생활안정에 기여할 기금을 조성하고 관리하는데에 그 목적을 둔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연금이라 함은 전회원이 적립하는

기금으로서 퇴직연금과 복지연금을 말한다.

2. 퇴직연금이라 함은 사망 또는 폐업시 지급되는 연금을 말한다.

3. 복지연금이라 함은 만65세 이상 회원 또는 20년 이상 협회 가입회원으로서 신명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자진폐업한 자에게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연금을 말한다. (개정)

4. 사망위로금이라 함은 회원의 사망시 지급되는 위로금을 말한다. (신설)

5. 연금회비라 함은 소정의 연금을 지급할 목적으로 조성하는 기금으로 회원이 납부하는 회비를 말한다.

6. 연금의 배당(이하 “배당”이라 한다)이라 함은 조성된 기금을 각 회원별로 등분 계산하여 그 금액을 중서로써 회원에게 교부하는 것을 말한다.

제 3 조(시행세칙) 이 규정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협회 이사회에서 따로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 2 장 기금의 조성 및 관리

제 4 조(기금의 조성) 협회는 연금의 지급을 위하여 다음의 수입금으로 기금을 조성한다.

- 회원이 납부하는 연금회비
- 기금에서 발생되는 이자
- 기타 수입금

제 5 조(기금 조성기간) 기금 조성은 협회가 존속하는 한 연속적으로 하되 연금회비의 관리는 총회에서 조정할 수 있다.

제 6 조(연금회비) 연금회비는 전조에 따른 특별한 결의가 없는 한 회원의 설계 보수액 및 감리비와 감정수수료의 각 1%로 하며 설계 도서 신고나 감리비 및 감정료 수령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 7 조(기금의 관리)

- 연금회비나 기타의 수입금을 수납할 때에는 당일중으로 지정된 금융기관에 예치하여야 한다.
- 각 지부에서 수납된 수입금은 매월 말일 마감하여 익월10일까지 본부가 지정한 금융기관으로 온라인 송금하여야 한다. 다만, 수시송금을 원하는 지부는 따로 본부와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개정)
- 기금의 예치방법과 예치기관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4. 예치된 기금은 연금 지급 이외의 타용도에서 사용할 수 없다.

5.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는 일정금액 이상의 기금은 선택예금 또는 위원회에서 정하는 기관에 예치하기로 하고, 입·출금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에서 선출된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공동 관리하게 된다. (개정)

6. 협회 정관에 의한 임원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업무를 소홀히 하여 손실을 끼쳤을 때에는 총회가 결의하는 데 따른 책임을 진다.

제 8 조(회계)

- 기금은 특별회계로 관리한다.
- 회계년도는 1년으로 하고 그 시기는 1월 1일로부터 당년 12월31일까지로 한다.
- 기금관리 특별회계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매회계년도 별도 예산과 결산을 따로 편성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기금의 관리에서 이 규정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협회의 회계규정에 따른다.
- 기금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협회 감사는 물론 별도로 공인회계사등 전문인의 감사를 받도록 할 수 있다.

제 3 장 연금의 배당 및 지급

제 9 조(연금의 배당)

- 조성된 기금은 매회계년도 별도 결산을 하여 회원에게 배당하여야 한다.
- 배당할 때에는 연금 배당 중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 10 조(배당기준)

- 배당이 완료된 기금에서 발생된 이식은 기 배당금액 비율로 당해년도에 배당을 받은 회원에게만 배당한다.
- 기타 배당 사항은 다음과 같이 한다.
 - 당해 기간중 무실적자는 배당에서 제외한다.
 - 당해 회계기간중 휴업을 하거나 협회로부터 징계 처분을 받은 일수는 배당금 산정에서 제외한다. (개정)
 - 신입회원은 연금회비를 납부한 다음달로부터 배당한다.
 - 배당받을 회원의 유고시에는 법적 상속인에게 지급한다.

제 11 조(퇴직연금의 지급) 퇴직연금은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 연금의 지급액은 이미 배당된 중서의

표기금액과 지급사유가 발생한 당해년도분의 중도 배당액과의 합계액으로 한다.

2. 지급 사유가 발생한 당해년도분의 중도 배당액은 직전 년도 배당액을 당해 년도 경과 월수로 등분하여 계산한다.

3. 당해년도 경과 월수는 당해 년도의 회계년도 개시일로부터 퇴직 또는 사망일이 속하는 달까지로 한다.

제 12 조(복지연금의 지급) 복지연금은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1. 연금의 지급 금액은 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이사회에서 정하되 지급초년도는 월600,000원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가입년수는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복지연금 지급액 = 기준액 × $\frac{\text{가입년수}}{20}$)

2. 복지연금은 퇴직연금 일시 지급시까지 지급할 수 있다.

3. 복지연금 수혜자에게 퇴직연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기수령한 복지연금액은 배당증서 액면가에서 공제하고 지급한다. (신설)

4. 복지연금 수혜자는 배당증서를 협회에 보관시켜야 한다. (신설)

제 13 조(사망위로금의 지급)

사망위로금은 배당금 총액과 동일한 금액으로 지급한다. 다만, 복지연금 수혜자는 사망위로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신설)

제 14 조(연금운영 위원회의 설치) ① 이 규정에 의한 연금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 처리하기 위하여 협회에 연금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칭한다)를 설치한다. (신설)

② 운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신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다음날로부터 시행한다.

1. 연금회비 납부 : 1987년 1월 1일

2. 퇴직연금 지급 : 1988년 1월 1일

3. 복지연금 지급 : 1990년 1월 1일

4. 사망위로금 지급 : 1990년 1월 1일
(신설)